

# 변경보고서

## 1. 대상 펀드

- 다올랜드칩부동산투자신탁1호

## 2. 주요 변경내용

-신탁만시 전 매매대금 분배를 위한 회계기간 조정

구분	변경전	변경후	비고
제31조 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)	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3월간으로 한다. 다만,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	① 1기: 2010.12.15~2011.03.14 ② 2~19기: 2011.03.15일로부터 매3개월간 ③ 20기 : 2015.09.15~2015.11.12 ④ 21기 : 2015.11.13.~2015.12.14. 다만,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	회계기간 조정
제39조(보수)	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-----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	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-----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(단. 부가가치세 발생시 별도로 한다.)	추가

## 3. 변경시행일

: 2015년 11월 12일 (목).    끝.